

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교통정책과

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113호
일부개정 2025 · 12 · 26 조례 제232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5 · 12 · 26>

- “어르신”이란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- “시내버스 등”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,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
- “대중교통비 지원”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교통카드”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지급 대상 및 시기·지원금액에 관한 사항
-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
- 신청 및 지원절차
-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지원대상 및 금액)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

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

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,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·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신청)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지원절차)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를 어르신에게 지급한다.

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중단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2. 제4조제1항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
3.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
4.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
5.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,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
3.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

제10조 삭제 <2025·12·26>

부칙

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·12·26 조례 제232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